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65
----------	-----

2023. 10.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의내용 : 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영유아 관련 시설 운영에 역량을 갖추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어린이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
 -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라. 위탁시설 개요(신규위탁)
- 어린이회관

소재지	규모(㎡)	준공일 (개관일)	종사자 수	사 업 내 용	위탁기간 (예정)	비 고
역삼동 653-4 A2BL 공공기여시설	대지 553㎡ 연면적 2,810.25㎡ (지하2층,지상6층)	2024. 1월. (2024 5월예정)	17	■ 발달지원센터 운영 ■ 체험 프로그램 ■ 놀이실 ■ 장난감 도서관 등	2024. 4. 1. ~ 2027. 3. 31.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맞춤

○ 위치도



마. 위탁기간 : 5년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외의 방법

사. 수탁자 선정방법 :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

아. 소요예산 : 1,021,896천원(구비 100%)

- 인건비 : 449,870천원
- 관리운영비 : 101,430천원
- 사업비 : 169,526천원
- 시설비 : 301,070천원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관계법령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1 동의안 세부내용 검토

가.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개관예정인 (강남)어린이회관의 운영 전반과 수탁 재산 관리 및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한 사업 등을 전문성 있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¹⁾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²⁾에 의거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등)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위탁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하며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

○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음.(어린이회관 사업 개요 등은 참고자료 참조)

- ①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 ② 육아정보서비스 제공
- ③ 보육시설 등 관련기관에 대한 종합지원
- ④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 사업
-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청장이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어린이회관을 민간기관인 수탁자에게 위탁하려는 사무의 범위는 ‘어린이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부문’으로서 구체적인 위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회관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 ② 홈페이지 구축 운영
- ③ 시설 유지관리
- ④ 운영관련 대외 협력사업, 관련분야 연구조사
- ⑤ 그 밖의 회관운영 관련사업

나. 수탁자 선정 방식

- 본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 ‘공개모집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강남어린이회관이 조성될 같은 시설물에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수탁자: 총신대)’가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재산 관리 및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어린이회관’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수탁자를 일원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동기가 반영되어 있음.
- 수탁자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³⁾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 재계약 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인 바, 집행부의 재량 사항에 속한다고 하겠음.

- 금번 회기에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조직 및 인력)에서도 어린이회관 관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안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u>한다</u>)과 보육전문요원·전산원·영양사·간호사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 ----- ----- <u>하며, 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u> -----.

- 위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사실상 어린이회관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주체 일원화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린이회관과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방식을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① 두 기관을 각각 별도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② 두 기관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 어린이회관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하려는 사무는 주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운용과 건물 관리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라고 보여지는 바, 관련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2 동의안에 대한 결론

- 민간위탁사업은 공행정이 맡아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부문에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① 비용 절감을 통한 재정의 합리화 도모, ② 공무원의 증원 수요 억제, ③ 대민서비스 향상, ④ 업무의 전문성 확보, ⑤ 행정의 민주화 및 민간 부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였고 지역사회 특성과 욕구 파악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자에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문적 기술을 발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금번 동의안이 채택한 ‘어린이회관 수탁기관 공개모집외 방식’이 ‘통상적인 공개모집 방식’에 비하여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1. 어린이회관 사업개요

- 시 설 명 : **강남어린이회관**(*가칭-강남아이문화센터)
- 위 치 : 역삼동 653-4(대지면적 553 m^2)
 - ※ 문화 집회시설 및 공동주택 중 **공공기여 부분(기부채납)**
-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2,810.25 m^2
- 추진기간 : '18. 10. ~ '24. 1.
- 개 관 일 : 준공(2024.1월) 이후
- 운영방식 : **민간위탁**(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겸직)
- 주요시설 : 육아종합지원센터(본원), 발달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놀이실,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등



< 건축개요 >

- 지역지구 및 용도 :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21세대) 등
- 규 모 : 지하6층/지상11층(지하2층/지상6층 사용)
- 연면적 : 4,841.03 m^2 (문화시설 2,810.25 m^2) ▪ 건폐율/용적률 : 53.76% / 468.93%

<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칭 **강남어린이문화회관**) 활용 계획>

- 시설활용(안) :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다목적실, 체험관, 상상도서관, 키즈카페, 소공연장
- 활용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시설 노후(삼성로72길 7, 면적 279.18 m^2 , 지상2~4층, 2006년 준공)
 - 주차장이 협소(3대)하여 시설이용에 불편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2. 어린이회관 조감도, 배치도, 층별 현황



['23. 9월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지하1층~지상6층)
청년주택
 (지상7~11층)
 ※ 현재 골조 완료
 (설비 및 벽체 마감공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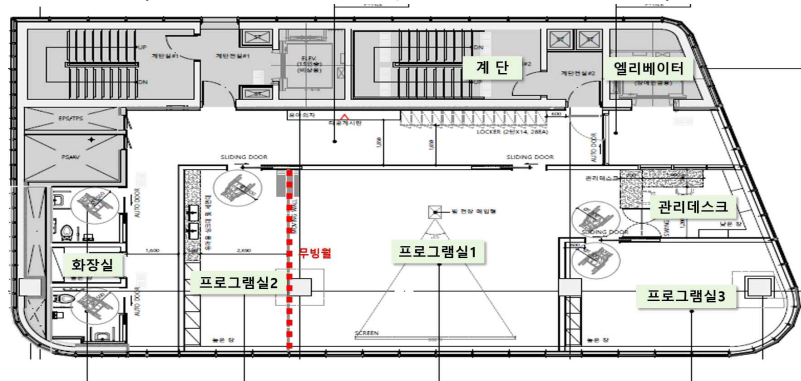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위 치	역삼동 653-4, A2BL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21세대)	
대지면적	553m ²	
건축면적	297.32m ²	
연면적	4,841.03m ² (문화시설 2,810.25m ²)	
규 모	지하6층/지상11층 (지하2층/지상6층 사용)	
층 별 구 성	지상11층	주민카페
	지상7~10층	청년주택
	지상6층	248.65m ² 다목적실
	지상5층	246.20m ²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지상4층	248.65m ² 발달지원센터
	지상3층	246.20m ² 프로그램실
	지상2층	248.65m ² 놀이실(서울형키즈카페)
	지상1층	134.91m ² 로비
	지하1층	318.03m ² 장난감도서관
준공시점	지하2층	828.03m ² 주차장(21대)
	2024. 1월	

3. 어린이회관 층별 구성(안)

구 분	평면도(면적)
6층 다목적실	면적 248.65㎡ (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9.40㎡)
5층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	면적 246.20㎡(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6.95㎡)
4층 발달지원센터	면적 248.65㎡(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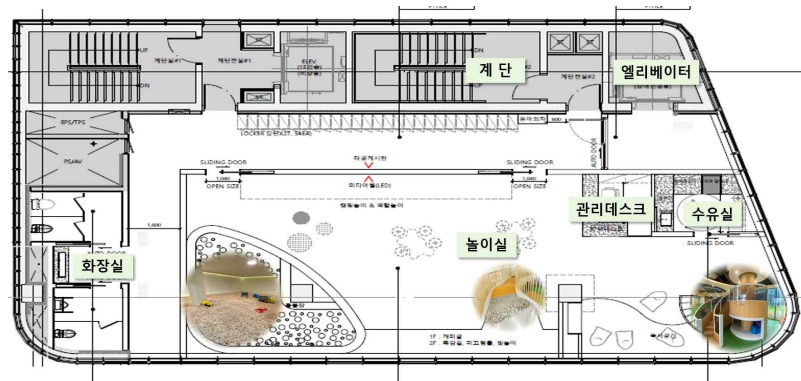
3층
프로그램실

면적 246.20㎡(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6.95㎡)



2층
놀이실
※ 서울형키즈카페
신청·운영 예정

면적 246.20㎡(전용면적 139.25㎡, 공용면적 1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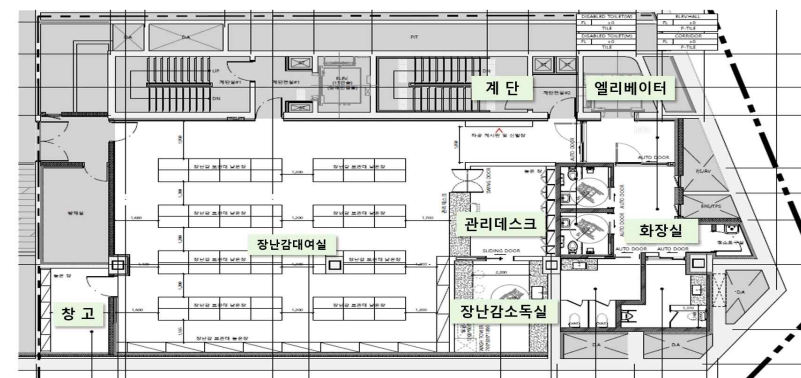
1층
로비

면적 134.91㎡(※청년주택 로비와 구분 113.42㎡)



지하1층
장난감 도서관

면적 318.03㎡(전용면적 179.16㎡, 공용면적 138.87㎡)



4. 어린이회관 운영계획(안)

☐ 인력구성

(단위:명)

총 계	관장 (*육아종합지원 센터장 겸직)	어린이회관 팀				
		팀장	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행정원	발달지원센터팀
17	1	1	2	6	1	6 (상근3/비상근3)

*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이 입주하여 1개 시설에 2명의 장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어린이회관장을 겸직하도록 함(* 자치구 중 강동구 겸직, 송파구는 관장, 부관장)

☐ 주요사업

시 설 명	사 업 내 용
다목적실 (지상6층)	▪ 학부모 및 보육교사 교육, 어린이집 관계자 컨퍼런스, 소공연 등
발달지원센터 (지상4층)	▪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검사, 상담, 치료, 부모 교육 등 시행 - 공간구성 : 모래/미술실, 인지/언어실, 놀이실, 감각통합실, 세미나실(부모교육 등) - 인력구성 : 총6명(상담사 1명, 상근치료사 2명, 비상근치료사 3명) ▪ 치료실 이용료 : 회당 70,000원(자부담 35,000원) → 이용료 발생분은 비상근치료사 인건비 및 발달센터 교재교구비로 사용
프로그램실 (지상3층)	▪ 요리놀이, 미술놀이 등 영유아의 통합적 발달 지원 프로그램 실시 ※ 매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구성 - 공간구성 : 프로그램실 3(프로그램실 1, 2사이 무빙월 설치로 가변적 사용 가능) - 인력구성 : 운영요원 2명 ▪ 프로그램실 이용료 : 5,000원 이내
놀이실 (지상2층)	▪ 영유아 대상 실내놀이터 운영(서울형 키즈카페 신청 예정) - 공간구성 : 놀이실, 수유실 등 - 인력구성 : 운영요원 2명 ▪ 이용료 : 3,000원 이내(돌봄 시 추가 2,000원 발생)
장난감도서관 (지하1층)	▪ 대형 장난감 대여사업 진행 ※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협소로 소형 장난감 위주 대여사업 진행 - 인력구성 : 총3명(운영요원 2명, 장난감 세척요원 1명) ▪ 이용료 : 회원가입비 연 1만원(수입금은 장난감 구매)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65
----------	-----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보육지원과

1. 제안이유

- 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함.
- 나. 이에 신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강남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내용 : 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등)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 필요성

- 영유아 관련 시설 운영에 역량을 갖추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운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신규위탁)

○ 어린이회관

소재지	규모(㎡)	준공일 (개관일)	종사자 수	사 업 내 용	위탁기간 (예정)	비 고
역삼동 653-4 A2BL 공공기여 시설	대지 553㎡ 연면적 2,810.25㎡ (지하2층,지상 6층)	2024. 1월. (2024 5월 예정)	17	■ 발달지원센터 운영 ■ 체험 프로그램 ■ 놀이실 ■ 장난감 도서관 등	2024. 4. 1. ~ 2027. 3. 31.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맞춤

○ 위치도



마. 위탁기간 : 5년 이내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외의 방법

사. 수탁자 선정방법 : 강남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 선정

아. 소요예산 : 1,021,896천원(구비 100%)

- 인건비 : 449,870천원
- 관리운영비 : 101,430천원
- 사업비 : 169,526천원
- 시설비 : 301,070천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운영 등) 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경우 위탁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하며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재계약 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